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홍콩상하이은행의 대한민국내에 있는 지점(이하 “은행”이라 함)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함)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대한민국내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거래영업점에서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일부 조항이 다르며,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은 이 약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 (차주, 할인신청인,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사이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관련 여신거래 및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 ②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은행이 제 3차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이 약관을 적용한다.
-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대한민국내 영업점과 채무자의 본, 지점 사이의 제 1항 및 제 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 2 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여신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면 기재 금액을 전부 지급받고 동 어음상의 채무를 완전히 면할 때까지는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여신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내에서 은행이 정하여 비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한다. 그러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 등에 따른다.
- ③ 은행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 채무자는 그것이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여지는 최고율 범위내에서 상응하게 변경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이를 대한민국내 모든 영업점에 비치한다.
- ④ 채무자는 제 3항에 의하여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4 조 부채채무

- 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채채무와 채무자가 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은행에 협력을 부탁한 경우에 은행이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② 채무자와 은행간의 모든 여신거래에 관하여 보험료, 법률비용 등 제1항에 의한 부채채무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 대여유가증권을 그 거래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 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6 조 담보

- ①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 ② 담보는 법정절차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 ③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 7 조 기한전의 채무 변제외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 유가증권대여에 있어서의 기한전의 대여증권반환의무, 대여유가증권상에 설정하였던 담보권 설정등록의 말소의무 발생을 포함함. 이하 같음),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하기로 한다.**
 1. 어떤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채무자 또는 제3차 소유의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거나 채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2. **파산, 회의를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은행이 지급은행인 어음, 수표가 어음교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지급제시된 경우 은행이 부도처리한 때를 포함함)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4. **포괄근보증인**의 어떤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 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채무자가 당해채무의 전 여신기간(기한 연장된 경우의 연장기간을 포함함)을 통하여 **이자 지급의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때** 에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해채무는 그 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제 4항에 따라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채무자가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또는 부채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에는**, 당해 채무는 그 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은행은 채무자가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과 남은 기간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됨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은행의 이러한 통지는 적어도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이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독촉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하기로 한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호 외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압류**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공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담보재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가 있는 때
 3. 이 약관 **제5조(자금의 사용), 제18조(회보와 조사 등)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5. 다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여 동 **제3자와의 관계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전 각 호 외에 **청산절차 개시, 결산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⑤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독촉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하기로 한다.
 1. 이 약관 **제6조(담보) 제1항, 제15조(위험부담, 면책조항)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위반**하여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의 승낙없이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 완공된 건물, 기계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등 은행과의 거래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압류, 경매개시가 있는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이자, 지연배상금의 수령, 어음의 개서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 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모든 어음에 대하여, 또 어음의 주된 채무자(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인수인을 말함. 이하 같음)가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가 주된 채무자로 되어 있는 모든 어음에 대하여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 ② 할인어음에 대하여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1항 이외의 경우라도,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는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 ③ **채무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은행은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어음의 할인관계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 제8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 변제 의무,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채무와 채무자의 모든 예치금 기타의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 ② 은행이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 또는 기타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같기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상계 후 곧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모든 예치금을 그 기한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변제충당후 곧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의 채권, 채무의 이자, 할인으로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기간은 은행이 상계나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 변제충당은 **다른 종류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 채무**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다.

제 10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기한 도래한 채무자의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한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로 표시된 채권,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다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채무자는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 통장은 이미 신고한 서명 및/또는 도장을 찍어서 곧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의 채권, 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기간을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다른 종류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 채무간에 있어서는 은행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11 조 어음의 제시, 교부

- ① 은행이 어음거래에 있어서, 어음상의 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게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음을 수령하도록 곧 통지한다. 제10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기로 한다.
- ② 은행이 어음상의 채권에 의하여 제9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기로 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기로 한다.**
 -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 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9조, 제10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채무자가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 ④ 은행이 어음상의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기로 한다.

제 12 조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9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잔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잔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은행은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제 13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잔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한 때에는 제12조에 준하기로 한다.
- ③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제12조에 준하여 상계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은행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에,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 미도래의 채무에 관하여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하고,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환매채무를, 지급보증에 관하여는 사전구상채무를 채무자가 진 것으로 하고 은행은 충당의 순서, 방법을 지정할 수 있기로 한다.

제 14 조 외국환율

채무자와 은행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계, 대리환급 변제충당 또는 변제에 적용될 외국환율은 은행이 상계의 계산을 실행하거나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때 또는 채무자가 변제할 때에 은행이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 또는 은행이 인용하는 외국환율로 한다.

제 15 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어떤 증서 등이 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며,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 ②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은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 손상, 멸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기로 한다.
- ③ 어음요건의 불비나 어음을 무효로 하는 기재로 말미암아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불비로 말미암아 은행의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어음면 기재금액의 변제책임을 지기로 한다.
- ④ 은행이 어음이나 어떤 증서 등의 인영 또는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 증서 등과 인감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16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인감 및 서명 등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 인감 및 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채무자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은행은 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생긴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 통지의 효력

-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 변제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것이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장부 등에 기재된 일자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18 조 회보와 조사 등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경영, 영업상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 공장, 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그의 재산, 경영, 영업상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은행에게 곧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사, 감독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협력하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 19 조 신용정보의 교환 및 활용동의

- ① 채무자는 은행과의 여신거래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은행이 정보관리기간 동안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두고 동 사실을 신용정보활용기관이 자기거래상의 판단자료 또는 정책 부수자료로 교환, 활용함에 동의한다. 위 지침 등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1.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대상

- 1) 기업정보
위 지침 등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체의 부채, 재무현황 등
- 2) 불량정보
대출금의 연체 또는 용도의 유용, 지급보증대금금 또는 대위변제 발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신을 받음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사실들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 동 등록사유, 해제사유 등

2. 정보관리기간

- 1) 기업정보 : 등록기준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 2) 불량정보 :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3. 신용정보활용기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재무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 감독원 등

- ② 은행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의 대한민국 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들에게 위 제1항의 신용정보 기타 채무자와의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0 조 이행장소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제1조의 정하는 범위내의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거래영업점의 폐쇄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채권관리업무를 대한민국내의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에 이관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채무의 이행장소는 **채권관리업무를 이관받은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한다.

제 21 조 부속약관 및 준거법령

-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어음거래약정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당좌대출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기타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된다. 이 약관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각 거래별 부속약관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각 거래별 부속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이 약관과 각 거래별 부속약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약관과 각 거래별 부속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은행내규 및 은행관행에 따른다.

제 22 조 약관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로써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비치·게시에는 제 2항의 뜻을 명시한다.
- ② 통지의 발송 또는 비치·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가 이 약관과 부속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3 조 합의 관할

이 약관에 의한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과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거래영업점의 폐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은행이 채권관리업무를 대한민국내의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에 이관한 경우에는 **채권관리업무를 이관받은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 24 조 언어

이 약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별지]

은행약관과 표준약관과의 비교

1. 이 비교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표준약관) ⑥항에 의거, 표준약관과 다른 은행약관의 주요 내용을 거래처가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차이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10005호)		은행약관	
관련조항	차이점	관련조항	차이점
제1조②항	②항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있음	제1조②항	단서조항 없음
제3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선택 적용할 수 있음	제3조	동 내용 없으나, 대출상품설명서에 안내되어 있음
제3조	금융사정 및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화로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 최초로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변경된 사항이 적용됨	제3조	유예조항 없음
제4조	대출약정 전에 서면에 의하여 대출조건과 부대비용 등에 관해 채무자에게 설명의무	제4조	동 내용없으나, 대출상품설명서를 통해 이를 이행하고 있음
제6조	담보물건 처분시 처분일로 부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	제6조	정하고 있지 않음
제7조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에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 통지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음	제7조	지급하여야 할 날로 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로 정하고 있으며, 부채채무의 연체도 포함.
제7조	은행약관과 같은 조항이 없음	제7조	채무자가 제 3자와의 관계에서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한 사유 발생도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하나로 규정
제8조	기한이익 상실시 연대보증인 앞 통지		연대보증인에 관한 조항이 없음
제9조	할인어음 환매의무를 은행약관 대비 구체적으로 명시	제8조	할인어음 환매의무 사유를 표준약관에 비해 광범위하게 적용
제10조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상계전 지급정지 조치를 할 경우 보증인 앞 지체없이 통지	제9조	표준약관과 같이 보증인에 관한 내용없음
제11조	은행동의를 관한 규정없음	제10조	채권과 채무가 이종통화일 경우 은행의 동의후 상계
제12조	어음채권을 상계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	제11조	채무자가 어음상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에게 어음을 찾아가도록 통지
제14조	은행약관과 같이 기한미도래 채무의 기한도래 채무로 간주하는 조항이 없음	제13조	은행의 채권보전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한 미도래 채무도 기한도래 채무로 간주하여 은행이 충당순서 등을 정할 수 있음
제15조	은행약관과 같은 조항이 없음	제15조	어음요건의 불비, 권리보전절차의 불비 등의 사유로 인해 은행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의 변제책임을 부담함
	은행약관과 같은 조항이 없음	제19조	신용정보의 교환 및 활용동시에 관한 조항으로 홍콩상하이은행의 대한민국 외의 본점 또는 지점들에게 업무처리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신용정보 기타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제20조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대출기간 중 금리 등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향후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은행에 금리 등의 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표준약관과 같은 조항이 없음